

법무부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법무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2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국제투자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2명	임용일 ~ 2년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과천)

※ 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국제투자	국제투자분쟁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수행 및 대응 ○ UNCITRAL, ICSID 등 ISDS 관련 국제회의 참가 ○ ISDS 관련 법적지원 및 연구 수행 ○ ISDS 관련 기획, 국회, 예산 등 법무행정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11. 23.) 기준]

구분	직위별 요건	
국제투자분쟁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국내 또는 영미권*)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변호사 자격증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 11. 2.) 기준]

구분	우대요건
국제투자분쟁 (행정사무관)	○ 응시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 국제중재(특히 국제투자분쟁) 소송수행 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 관련분야 학위(석사 이상) 소지자 ○ 영어능통자* * ①어학시험 성적 ②영미권 학사 이상 학위 ③국내-영미권 변호사 자격 동시 소지

※ 관련분야 :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근무예정직위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관련분야 직무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관련분야의 경우 공고문 내 [붙임] 직무기술서를 참고할 것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불인정됨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직무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업무 분장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인턴 경력은 불포함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할 것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국제중재(특히 국제투자분쟁) 소송수행 실적이 1건 이상인 자'는 국제투자분쟁 등 국제중재 사건만을 의미하며, ICSID, PCA, ICC 등 국제중재 기관 웹사이트 중 대리인란 캡처본 또는 소속 로펌 등의 소송수행 실적 확인서 필요

- '관련분야 논문 등 연구실적'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연구실적 등을 의미하며, '21.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학위논문 제외,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관련분야 :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 등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 작성자가 표시된 부분의 논문 사본 제출

- '관련분야 국내 학위(석사 이상)' 에서의 '관련분야'는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관련이며, 학위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반드시 지참할 것

- '영어 능통자' 기준

1. 어학시험 성적

※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2개 이상 등급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만 인정

※ 시험 종류는 아래 표에 명시된 어학 시험으로만 한정

시험	TOEFL IBT	인정등급
점수	115점 이상	1
점수	107점 ~ 114점	2
점수	99점 ~ 106점	3

시험	FLEX (듣기-읽기)	TOEIC	New TEPS	TOEFL(ibt)	인정등급
점수	900점 이상	941점 이상	525점 이상	90점~98점	4
점수	800점 ~899점	890점~940점	452점~524점	80점~89점	5
점수	700점 ~799점	790점 ~889점	386점 ~451점	75점~79점	6

2.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학위 (학사, 석사, 박사 모두 포함) 소지자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반드시 지참할 것

3. 국내 및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변호사 자격 **동시** 소지자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직무이해도), 관련분야 직무 경력 및 논문·연구 실적, 국제중재(특히 국제투자분쟁) 소송수행 실적, 관련분야 학위, 영어 능통자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제3항)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10. 21.(수) ~ 11. 2.(월)	'26. 10. 29.(목) ~ 11. 2.(월)	'26. 11. 18.(수)	'26. 11. 23.(월)	'26. 12. 2.(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필요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0. 29.(목) ~ 11. 2.(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채용 담당자(02-2110-3056)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혁신행정담당관실
-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겹봉투에 ‘국제투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1부	
	우대요건 관련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우대요건 관련 ‘관련분야 학위’ 사본 1부	○ 별지서식 제8호
	우대요건 관련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1부	○ 별지서식 제9호
	우대요건 관련 소송수행 실적 증빙서류 사본 1부	○ 별지서식 제10호
	우대요건 관련 ‘어학 성적’ 증빙서류 사본 1부	
	우대요건 관련 ‘영미권 학위’ 사본 1부	
	우대요건 관련 ‘영미권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2. 3. ~ '27. 1. 2.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2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사무관(일반임기제)	93,801	53,316

※ 임용 예정 시기(2027년 1월)에 따라 연봉 상·하한액은 변동될 수 있음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종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interface. On the left sidebar, '증명·등록·신청' (Proof, Registration, Application) is highlighted. In the main content area, under the '민원증명' (Citizen Proof) tab, the path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Fact Confirmation and Issuance of Proof)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n arrow. Below this,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Information on Business Industry for Closed Businesses)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한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예정직위에 대한 직무의 주요 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 (붙임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 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국제투자분쟁과(☎02-2110-4246)
 -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혁신행정담당관실(☎02-2110-305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국제투자분쟁과’ 일반임기제(5급)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수행 및 대응 ○ UNCITRAL, ICSID 등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개선 관련 국제회의 참가 ○ 국제투자분쟁(ISDS) 법적지원 및 연구 ○ 기획, 국회, 언론대응, 예산 등 법무행정 업무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기획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이해 및 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 일반, 국내법 및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 영어 등 외국어의 능숙한 구사능력 및 국제적 감각
------	--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국내 또는 영미권*) 자격증 소지자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를 의미. 이하 같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연차별 차등우대]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불포함 ○ 국제중재(특히 국제투자분쟁) 소송수행 실적이 1건 이상인 자 [건별 차등우대] ※ 국제투자분쟁 소송수행 실적은 타 국제중재 수행 실적보다 우대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 [건별 차등우대] ※ '21.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학위논문 제외,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관련분야 학위(석사 이상) 소지자 ○ 영어능통자* * ①어학시험 성적 ②영미권 학사 이상 학위 ③국내-영미권 변호사 자격 동시 소지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제출내역 체크 후 서명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8.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제출(사연기수, 변호사시험 합격연도 및 회차 보이게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영미권 변호사)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모두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10. 우대요건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등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경력은 응시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기재하고,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연·월·일), 부서, 직위, 직급 및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표시),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및 폐업사실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제출(공고문 참조)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 ※ 외국법인 등 외국 경력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11. 우대요건 관련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발급처: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 ○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국세청 홈택스)
12. 우대요건 관련: 관련분야 학위증 사본 1부(별지서식 제8호 추가제출)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증명서 모두 제출 *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13. 우대요건 관련: 관련분야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1부(별지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요지),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첨부 한함 * 국제투자분쟁,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국제법 ○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구 분	내 용
14. 우대요건 관련 소송(국제중재, 특히 국제투자분쟁) 수행실적 증빙서류 사본 1부(별지서식 제10호)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중재(특히 국제투자분쟁) 소송수행 실적'은 ICSID, PCA, ICC 등 국제중재 기관 웹사이트 중 사건 대리인란 캡처본 또는 소속 로펌 등의 소송수행 실적 확인서 제출 ○ 개인신상정보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가능
15. 우대요건 관련 '영어 능통자'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 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2개 이상 등급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 ○ 영미권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을 면접일에 반드시 지참할 것 ○ 영미권 학위(학사, 석사, 박사 모두 포함) 소지자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16.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의 경우에만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 금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제출 서류명	필수 여부	제출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필수	☐
7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필수	☐
8	학위(학사, 석사, 박사)증명서 사본 (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필수	☐
9	우대요건 관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등 사본,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자만	☐
10	우대요건 관련 '관련분야 학위, 소송(국제중재, 특히 국제투자분쟁) 수행 실적,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 요약서 및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
11	우대요건 관련 '영어능통자'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
12	주민등록초본 사본 (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만	☐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원본)

법무부장관 귀하

본인은 법무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국제투자분쟁	
응시자격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국내 해외	
※응시번호	채용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법무부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국제투자분쟁	
응시자격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국내 해외	
※응시번호	채용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국제투자분쟁
 - ② 응시자격 : 국내 또는 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 또는 첨부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채용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국제투자 분쟁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성명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국내		해외			

2.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취득국가)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00.00	

3. 우대요건 ※ 해당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령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변호사 수습기간 표시)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소 송 실 적	사건번호	사건(청구) 내용				선고(결정)일		
연 구 실 적	제 목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발표기관)	발표(게재) 연월일	등재 구분	논문 기여도	학위 논문 여부
	한글명(영문명)							
학 위	학위 구분	학교명		졸업(예정)일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영 어 능 통 자	어학시험	시 험 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성적 유효기간)		점수(등급)		영문성명
	영어권 학위	취득연월	학위구분	전공분야			취득국가	
		'00.00.00	학사~박사					
	국내-영미권 변호사 자격 동시 소지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일			영미권 변호사 자격 취득일(취득국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 방안 순으로 작성함
- 분량은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총 6매 이내)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별지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논문개요	<div>○ 논문제목</div> <div>■ 한글명 :</div> <div>■ 영문명 :</div> <div>○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div> <div>■ 등재구분("√" 표기) : ☐ SCI ☐ SSCI ☐ A&HCI</div> <div>☐ SCIE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div> <div>■ 게재지명 :</div> <div>■ 게재일자 :</div> <div>○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div> <div>■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div> <div>■ 공동연구자 :</div>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국제중재 등 소송수행 실적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소송개요	○ 수행기관 : ○ 사건번호 :	
내용 요지		

본 소송수행 실적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내용 요지는 반페이지 이내로 작성

※ 국제중재(특히 국제투자분쟁)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ICSID, PCA, ICC 등 국제중재 기관 웹사이트 중 사건 대리인란 캡처본 또는 소속 로펌 등의 소송수행 실적 확인서 제출. 개인신상정보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